

ISSN 2765-3005

Vol. 13 / 2022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Vol. 13 / 2022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3호

발행일 2022년 7월 28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799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s://www.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 연구모임
(류은영, 곽수영, 김진경, 신은정, 안수연, 유미예, 이정효)

I. 연구 목적	02
II. 국내외 유사 제도	02
1. 국내 유사 제도	02
2. 국외 유사 제도	08
3. 현 등록제도의 특징과 과제	09
III.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	10
1. 국내 주요 기관 중요자료 현황	10
2.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	12
IV. 결론	15
참고문헌	16

| 주요 키워드 |

국가중요도서관자료, 중요자료, 도서관자료, 등록제도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에 관한 연구¹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 연구모임
(류은영, 곽수영, 김진경, 신은정, 안수연, 유미예, 이정호)

요약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수많은 고문헌뿐 아니라 최근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근대문헌과 각 지역의 역사를 담은 향토자료 등 다양한 시기에 인쇄·필사된 자료들은 각 도서관의 귀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통적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관리·운영되었다. 그러나 많은 자료가 다양한 문제로 가치평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인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기는 하나, 등록 기준과 대상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장치와 더불어 도서관 자료 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유사 제도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고 국내 도서관계의 중요자료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의 정의 및 대상자료 범위, 심사방안,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를 마련하였다.

주요 키워드 국가중요도서관자료, 중요자료, 도서관자료, 등록제도

1 이 연구는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 연구모임의 결과물로, 그 결과보고서를 수정·요약한 것이다.

I. 연구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가도서관으로서 자료의 수집 및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1965년부터 납본제도를 운영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나,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자료를 비롯하여 납본에서 누락된 자료와 개인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자료 등 일부 자료는 정확한 수량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자료의 희귀성과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이 있음에도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여 방치되거나, 소장자(처)가 자료의 가치와 중요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료가 폐기 또는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또 다른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대문헌의 경우 과거에는 중요자료로 인식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 있는데, 기록문헌의 경우 외형적인 가치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한 규범과 잣대만으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20) 등에서 제안된 「도서관법」 개정안의 내용 중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제도의 비교 분석, 중요자료 현황 조사 등으로 국가적인 중요자료 등록제도의 정의 및 범위, 세부기준 마련 등 관련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요자료를 국가 기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자료 보존 및 관리로 도서관 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국내외 유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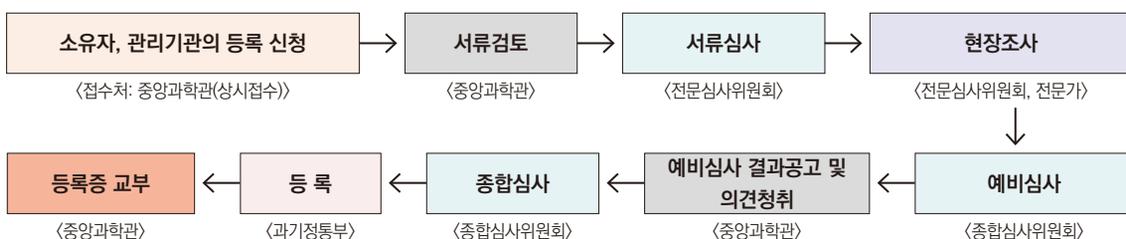
1. 국내 유사 제도

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를 등록하여 보존·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한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나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선정·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하는 제도이다. 2014년 4월 국가과학기술사물 인증제 추진계획(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2014~2018))을 발표하였고, 2018년 12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9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며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 등에 관한 과학기술자료들을 등록대상으로 하며, 3개 분과(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자연사) 전문심사위원회(분과별 10명 이내)와 종합심사위원회(15명 이내)의 심사를 거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2020).



〔그림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절차²

2021년 기준 한국형 전전자 교환기 TDX-1, 64메가 디램, 개인용 컴퓨터 SE-8001, 대한지질도, 『자산어보』 등 35건이 등록되어 있다.³ 등록된 자료는 전문가 자문, 보존관리를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 등을 지원한다. 2년 주기로 정기 점검하며, 3년 또는 5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책자(리플릿, 도록 등) 제작, 교육 프로그램·전시 등 홍보와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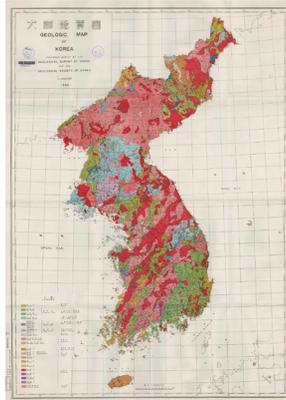
2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출처: <https://www.science.go.kr/board?menuId=MENU00772&siteId=>

3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2022. 2. 24.). 과학기술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가과학유산 12건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1459&searchOpt=ALL&searchT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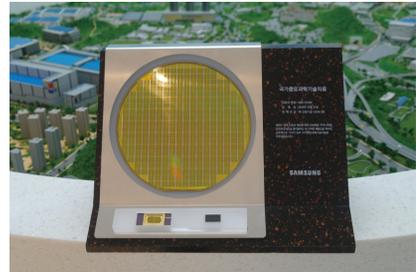
4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출처: <https://www.science.go.kr/board?menuId=MENU00772&siteId=>



제 산업기술-2019-2호
한국형 전자교환기 TDX-1
(국립중앙과학관 소장)



제 기초과학-2019-1호
대한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 산업기술-2019-3호
64메가 디램
(삼성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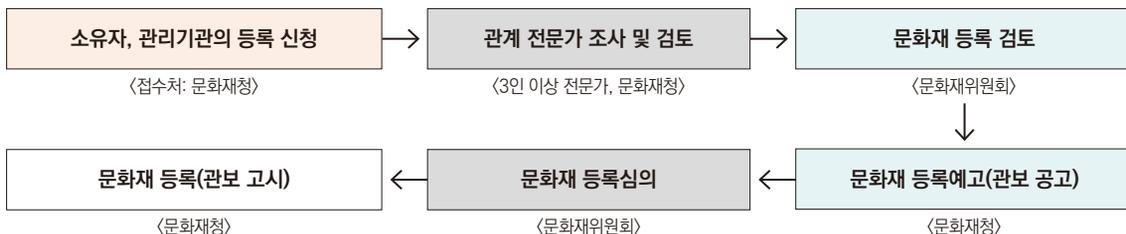
[그림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사례⁵

나.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 시기 형성된 건축물·시설·유물을 중심으로 유산들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제1호, 법률 제18157호)를 말한다. 2001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법을 개정해 역사유적, 동산문화재 등을 포함하도록 등록대상을 확대하였다(김성도, 심동준, 2011).

국가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개항기부터 현재 기준으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으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 별도 기준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대상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원형유지 및 희소성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야 한다(「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제4조, 「문화재청 예규」 제214호).

5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2020. 1. 31.). 첫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12건 등록 공고. 국립중앙과학관. 출처: <https://www.science.go.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59&linkId=4700718&menuId=MENU00492&schType=0&schText=&schStartDate=null&schEndDate=null&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그림 3]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절차⁶

국가등록문화재에는 건축물 등 901건(2021. 4. 5.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문화재는 현장조사 등으로 관리한다. 또한 국가 보조금,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기타 세제지원(재산세 50% 감면 등) 등도 제공한다.

종류	사례
부동산 (건조물)	    <p>여수 미래 제2터널 (여수시청)</p> <p>울산 울기등대 구 등탑 (해양수산부)</p> <p>서울 건국대학교 구 서북학회회관(건국대학교)</p> <p>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p>
동산 (유물)	     <p>토끼와 원숭이</p> <p>양단 아리랑 드레스</p> <p>소방 헬기 까치2호</p> <p>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p> <p>공병우 세벌식 타자기</p>

[그림 4] 국가등록문화재 종류⁷

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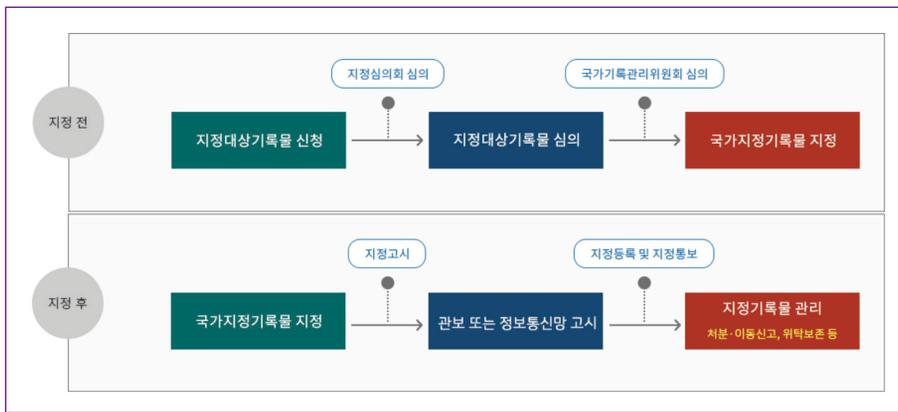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도’는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훼손되고 유실되는 공공 및 민간 기록물을 보존하고 정보화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2000년에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 개정으로 민간 기록물로 지정

6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등록문화재의 지정 신청 사례[인용일: 2022. 5. 5.]. 출처: https://www.e-minwon.go.kr/webs/menu.jsp?menu_id=info07

7 문화재청(2021. 7. 21.). 국가등록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재청 공식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chagov/222439541633>

범위가 확대되었다(최재호, 이영학, 2016). 2009년에는 「민간 기록물 수집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규칙)을 제정하였다.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 기록물, 즉 시기 제한은 없으나 근현대 생산 기록물 중심으로 종이문서·대장류, 시청각물, 간행물, 도면, 지도, 카드, 구술자료, 기록사본, 디지털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다.⁸ 기록물의 원본성, 진위성, 희소성 등 품질 평가와 수록내용 평가, 기대효과나 소유자의 협조성 여부 등 지정효과 평가를 기준으로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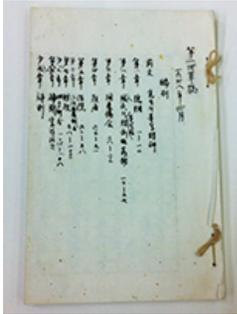


[그림 5]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절차

2008년에 ‘유지오의 대한민국 제헌헌법초고’(제1호),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제2호),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록물’(제3호)과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제4호)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7건이 지정되어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위탁보존, 기록물 정리, 전산화 지원, 보존용품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⁹

8 국가기록원. 민간 기록물 소개.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data/pepoleRecode.do>

9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data/nationalArchiveIntro.do>



유진오, 대한민국 제헌헌법
초고(제1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제3호)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장)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제4호)
(한글학회 소장)

[그림 5]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사례¹⁰

라.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관련 제도(가칭) / 문화체육관광부¹¹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관련 제도(가칭)’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용 사업과 보존에 필요한 국비의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법안 상정, 소관위 심사, 제384회 국회(임시회) 법률안 검토를 거쳤다. 법률안에서 지칭하는 ‘민간 기록문화’는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해 온 기록물 관련 문화를 의미한다.

민간 기록문화를 보존·활용하고자 권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이 민간 기록문화에 관한 조사, 수집 및 복원, 연구·교육,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공공기록물법」과 시기적(1894~1945)으로 규율대상이 중복되어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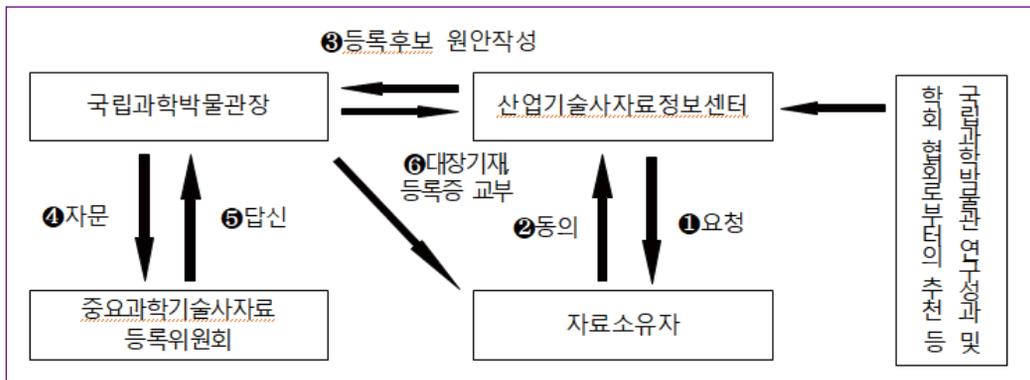
1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출처: <https://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do>

11 이병훈 의원 등 20인(2020. 12. 28.).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인용일: 2022. 5. 21.].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6970/detailIRP>

2. 국외 유사 제도

가. 일본 중요과학기술사자료 등록제도¹²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중요과학기술사자료 등록제도’는 일본의 모든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의 보존과 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제도를 실시하여 2021년까지 총 325건이 등록되어 있다. 과학기술(산업기술 포함)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성과를 보이며 후대에 계승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자료와 국민 생활, 경제, 사회, 문화 방식에 현저한 영향을 준 것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림 7] 일본 중요과학기술사자료 등록 절차

나. 미국 국립 녹음자료 및 영화 등록제도(National Recording Registry, National Film Registry)^{13 14}

‘미국 국립 녹음자료 등록제도’는 미국 의회도서관(LC: Library of Congress)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문화적·역사적·미학적으로 중요한 녹음자료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국내녹음자료보존법」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성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실물이 존재하는 녹음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대중, 녹음자료 기록관, 녹음산업의 대표자, 예술인 등이 후보작을 추천하면, 이를 녹음자료보존위원회(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Board)와 도서관 큐레이터가

12 国立科学博物館 (2021. 9. 1.). 2021(令和 3)年度国立科学博物館「重要科学技術史資料愛称: 未来技術遺産」24件の登録について. 출처: <https://www.kahaku.go.jp/procedure/press/pdf/696105.pdf>; 産業技術史資料情報センター. 研究活動. 출처: <http://sts.kahaku.go.jp/research/index.html>

13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Board. Available: <https://www.loc.gov/programs/national-recording-preservation-board/about-this-program/>; 법제처(2021. 6. 7.). 국내녹음자료보존법 2000(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세계법제정보센터.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49422&AST_SEQ=313&

14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Film Preservation Board. Available: <https://www.loc.gov/programs/national-film-preservation-board/about-this-program/>; 법제처(2021. 5. 20.). 국내영화보존법 1996(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세계법제정보센터.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49420&AST_SEQ=313&

검토한 후 자료를 선정한다. 선정해서 등재한 녹음자료는 관보에 게재된다.

‘미국 국립 영화 등록제도’는 문화적·역사적·미학적으로 중요한 영화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6년에 「국내영화보존법」으로 제정되었다. 최초 발행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실물이 존재하는 영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배우·감독·각본가·촬영감독, 창작 예술인·제작자·영화평론가, 기록관 및 영화 보존 단체, 영화산업 대표자, 일반인 등이 후보작을 추천하며, 이를 국내영화보존위원회(National Film Preservation Board)와 도서관 큐레이터가 검토·선정한다.

다. 기타 해외 유사 제도

『ALA-ACRL 일반 컬렉션에서 특별 컬렉션으로의 자료 이관 및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미국 도서관협회(ALA: America Library Association)의 산하 분과 중 하나인 미국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제작 배포하였다. 2016년 4판으로 수정되었으며, 희귀자료의 선정 기준과 이관(transfer)에 필요한 절차와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국립뉴질랜드도서관(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은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달리, 많은 국가 유산이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1997년 국가자료보존국(National Preservation Office)을 설립하였다(Heikell, Vicki-Anne, 2013). 보존국은 국립도서관 외 다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컬렉션을 관리하고자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자료 보존에 관심이 있는 도서관 직원이나 전문가들에게 수시로 교육도 실시한다.¹⁵

3. 현 등록제도의 특징과 과제

앞서 중요한 유산, 유물, 자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국내외 유사 제도 조사에서 등록제도 운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 사례에서 제도 운영은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하며, 지정대상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중복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둘째, 등록 절차는 대부분 귀중자료 신청 및 조사, 심사, 보존 등을 거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15 WIPO. Preservation policy. Available: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k/en/databases/creative_heritage/docs/nlnz_preservation_policy.pdf

셋째, 유사 제도의 경우 뒤에 설명할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와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제도별 취지와 대상, 방법 등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

유사 기관의 등록제도 운영사례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향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 및 보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과 같은 권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문화유산을 포괄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후에 제정되는 제도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차별성, 당위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도서관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셋째, 지정절차의 간결성, 신속성, 신뢰성(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정 후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장기 예산이 필요하다.

이상의 과제와 보완점을 바탕으로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

1. 국내 주요 기관 중요자료 현황

가. 주요 기관 중요자료 현황

국내 도서관을 대상으로 중요자료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을 제외하면 실제 ‘귀중자료 지정’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운영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주요 기관의 중요자료 관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주요 기관의 중요자료 관리 현황

구분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회도서관
소장량	• 고문헌 293,789점(2021. 10.)	• 고문헌 258,384점(2021. 5.) ¹⁶	• 고서 13,563점 ¹⁷
귀중자료	• 귀중본 1,951종 6,211책(점) • 국보 2종 26책, 보물 8종 17책, 문화재 8종 26책	• 세계기록유산 9,755책, 국보 9종 7,092책, 보물 26종 2,328책 • 도서번호에 '貴' 부여	• 귀중본 281종 1,134책 • 문화재 2종(임시의정원문서 및 인장)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제539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관리운영세칙	자체 업무 매뉴얼
귀중본 기준	• (고간본) 조선 효종(1659년) 이전, 중국 명조(1644년) 이전, 일본 게이초(1614년) 이전, 서양 1800년 이전 • (신간본) 1950년 이전 국내발간자료 • 국내 유일본, 명가 자필의 고본과 서간, 현전본이 적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등	• (고간본) 한국 인조 1년(1623년) 이전, 중국 명 홍무 1년(1368년) 이전, 일본 겐나 1년(1615년) 이전, 서양 17세기 이전 • 근세 명가의 초판본, 저명화가의 초쇄판화, 명가 자필서명 또는 구장본, 특수 장정본 등	• (한국본) 조선 인조(1649년) 이전 • (중국본) 명조 승정(1636년) 이전 • (서양) 1800년 이전 • 명가의 초고본, 초간본, 원본 또는 수택본과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일본이나 특수 장정본, 권자본 등

이외에 고문헌을 소장한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한국국학진흥원 등은 별도의 귀중자료 지정은 하지 않으며, 장서각은 모든 소장자료를 귀중자료로 취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대부분 장서가 기탁된 자료로 문화재 등록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나. 대학·공공도서관 중요자료 현황

국내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주요 목적에 맞게 다양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전국 1,172개 관으로 도서자료 1억 1,800만 권, 향토자료 61만 권, 비도서 400만 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2020. 12. 기준)(그림 8) 왼쪽 그래프 참조).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지역향토자료 및 역사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중요자료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중요자료의 발굴 및 보존, 그 특성에 맞는 지원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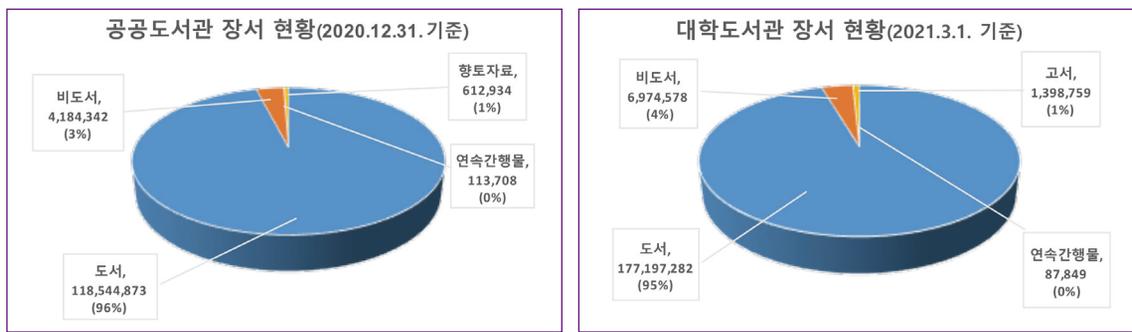
현재 서울 종로도서관, 남산도서관, 부산 시민도서관이 소장자료 중 중요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민도서관은 2002년 『포운시고(圃隱詩藁)』를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종로도서관은 2021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 등 고서 3책, 남산도서관은 2022년 『경조한성부당상구선생안(京兆漢城府堂上舊先生案)』 등 3종을 지정하였다.¹⁸

16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2021). 古典籍, 제15집, 68.

17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2020년 통계결과표. 출처: <https://www.libsta.go.kr/statistics/national/stat>

18 서울시교육청(2021. 3. 12.). [서울교육소식통] 종로도서관 소장 고서(古書) 3책 서울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272806717>; 서울교육청(2022. 4. 6.). [서울교육소식통] 남산도서관, 고문헌 3종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2693459246>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체 433개 관으로 도서 1억 7,700만 권, 비도서 700만 권, 고서 139만 8,759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서 중 국가지정 문화재 5,513건, 시도지정 문화재 790건으로 총 6,303건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림 8] 오른쪽 그래프 참조). 이는 전체 고서 중 0.5%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도서관 중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19개 대학에서만 중요자료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 대학에서는 중요자료를 자체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대학교 내에서 제한적 서비스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8]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장서 현황(출처: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학술정보통계시스템)

2.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

가. 정의

‘국가중요도서관자료’는 도서관자료와 국내 도서관 관련 기록물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자료로 정의되며, 국내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교육적·행정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말한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유형의 자료(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를 말하며, ‘국내 도서관 관련 기록물’은 도서관의 역사적·학술적·행정적·문화적 측면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 기록유산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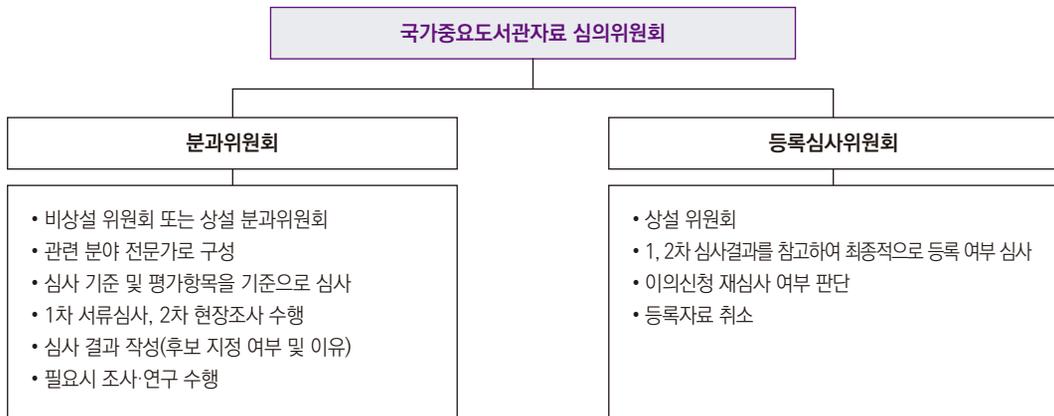
나. 대상자료 구분 및 기준

대상자료 기준은 ① 역사·학술·문화·교육·행정·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② 임진왜란 이전의 고판본이나 활자본, 기타 형태적 특징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형태 및 물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 ③ 국내외 유일본 및 유명인의 초본 등 그 수량이 극히 적어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문화재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자료와 중복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 심사 운영 방안

자료 지정·등록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중요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료의 조사·검토, 심사 및 의결을 목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와 등록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그림 9] 국가중요도서관자료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예시)

라. 등록 절차

자료 등록은 총 3회 차 심사를 거쳐 진행한다. 1, 2차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며, 분과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이의신청 접수 공고를 통과한 자료들은 3차 심사에서 등록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는다.





[그림 10]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 절차(안)

마.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심사기준은 형식적인 면에서 고사본 및 고간본, 신간본 및 필사자료, 국내 유일본, 희귀본, 초판본, 한정본이거나, 내용적으로 역사·학술·문화·교육·행정·예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 국내 도서관계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가중요도서관자료 평가 항목(안)(「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규정」 제3조,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440호)

기준	내용
역사·학술·문화·교육·행정·예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 후 50년이 지난 자료 중 역사적·학술적·문화적·교육적·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도서관의 역사적·학술적·행정적·문화적 측면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기록물
형태 및 물리적 가치	<p>[발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본(古寫本) 및 고간본(古刊本)(한국은 조선조 제17대 효종(孝宗) 이전(1659년) 등) • 신간본 및 필사자료(1950년 이전 국내 발간자료 등) <p>[판본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가의 초판본, 100부 이내의 한정본, 특수 장정본 중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 등
희소성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본, 명가 자필의 고본(稿本)과 서간(書簡), 서화, 고지도, 탁본(拓本) 등

바. 관리 및 지원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보존을 위해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자료 유형에 따라 내화, 방충, 방충 및 온도·습도 조절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별치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상태나 등급에 따라 1, 3, 5년 간격으로 관리 및 보존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자료 등록을 활성화하려면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정된 자료는 위탁보존, 자료정리, 전산화 등을 지원하거나, 자료 관리를 위해 보존용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즉, 등록증 부여 또는 인증서, 현판 등을 제공하고 보존 소모품이나 보존처리 비용, 인력 등 관리적 측면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디지털화나 보존·보수 관련 교육 지원 등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된 자료는 전용 누리집 구축 및 등록자료 소개, 디지털화 및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디지털컬렉션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전시회 개최, 관련 책자(영인본, 해제집, 도록 등) 발간 및 복제본 제작, 관련 강연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 후 다양한 홍보 채널(유튜브 등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게재 등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과 개인이 소장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제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를 제시하였다. 대상자료의 기준과 등록 절차를 비롯하여 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그리고 관리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을 국내외 유사 제도 비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제시된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안)’로 기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자료보존 기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발굴·등록·보존하여 우리나라 기록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학문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셋째, 등록된 중요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되어 국민에게 공개·활용되고 나아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도’ 연구가 전국 도서관 소장자료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우리 문헌의 보존과 활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2020).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출처: <https://www.science.go.kr/board?menuId=MENU00772&siteId=>

김성도, 심동준(2011).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문화재청.

김성수(2018). 한국고문헌 관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재청(2021. 7. 21.). 국가등록문화재란 무엇인가요? 문화재청 공식 블로그. 출처: <https://blog.naver.com/chagov/222439541633>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등록문화재의 지정 신청 사례[인용일: 2022. 5. 5.]. 출처: https://www.e-minwon.go.kr/webs/menu.jsp?menu_id=info07

법제처(2021. 5. 20.). 국내영화보존법 1996(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세계법제정보센터.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49420&AST_SEQ=313&

법제처(2021. 6. 7.). 국내녹음자료보존법 2000(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세계법제정보센터. 출처: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CTS_SEQ=49422&AST_SEQ=313&

이병훈 의원 등 20인(2020. 12. 28.).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민참여입법센터[인용일: 2022. 5. 21.].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6970/detailRP>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따른 지원·관리 방안 연구. 국립중앙과학관.

최재호, 이영학(2016). 국가지정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7, 51-91.

학술정보통계시스템 www.rinfo.kr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2021). 古典籍, 제15집. 서울: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2020).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2. 국외

国立科学博物館(2021. 9. 1.). 2021(令和 3)年度国立科学博物館「重要科学技術史資料愛称: 未来技術遺産」24件の登録について. 출처: <https://www.kahaku.go.jp/procedure/press/pdf/696105.pdf>

産業技術史資料情報センター. 研究活動. 출처: <http://sts.kahaku.go.jp/research/index.html>

ACRL Board of Directors(2016, June 25). Guidelines on the selection and transfer of materials from general collections to special collections. Available: <http://www.ala.org/acrl/standards/selctransfer>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Film Preservation Board. Available: <https://www.loc.gov/programs/national-film-preservation-board/about-this-program/>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Board. Available: <https://www.loc.gov/programs/national-recording-preservation-board/about-this-program/>

Heikell, Vicki-Anne(2013, Dec.). Our future lies in the past me hoki whakamuri, kia ahu whakamua, ka neke. International Preservation News, 61, 12-14.

WIPO. Preservation policy. Available: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k/en/databases/creative_heritage/docs/nlnz_preservation_policy.pdf